

2018년

# 소년 통고 실무 (개정판)

개요와 사례, Q&A



## 개정판 머리말

소년 통고제도는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의 장 등이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하는 절차로서, 보호자나 학교 등과 법원의 협력 아래 비행소년을 조기에 적절하게 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이러한 통고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개요 및 사례에 대하여 설명한 「소년 통고 실무」가 2012년 4월 발간되었으나, 어느덧 「소년 통고 실무」가 발간된 후 6년이 지나 당시의 통고 현황이나 사례를 기준으로 제작된 내용을 최근의 현황과 사례로 보완 및 수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축적된 통고 사례와 실무 등을 반영하여 종전의 내용을 대폭 수정 및 보완함과 아울러, 통고 시 주의할 점 및 자주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새로이 추가하여 본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새로이 발간되는 「소년 통고 실무」가 통고사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통고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통고제도에 관하여 더욱 쉽게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있어서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책자의 발간을 위하여 사례를 제공하여 주신 전국의 소년부 판사님들과 조사관님들, 내용에 대한 자문 및 감수를 하여 주신 보호사법연구반원 여러분, 그리고 자료 수집 및 편집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사법지원실의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 9.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 승 한

## 머 리 말

1963. 10. 1.부터 시행된 비행소년에 대한 통고제도는 학교 또는 사회복지 시설과 법원의 협력 아래 경미한 단계의 비행소년을 적절하게 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소년범을 범죄자로 바라보는 수사기관과는 달리 법원은 교육 대상으로 보아 가능한 한 형벌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본인과 가정 그리고 학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법원은, 소년이 저지른 비행의 내용을 확인하기보다 그 비행의 원인이 된 소년의 환경과 심리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 내부의 전문조사관을 활용하고, 법원 외부의 교육자,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가 등 지역 사회의 소년 전문가를 참여시켜 비행소년에게 가장 적절한 선도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이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전과로 남지 않아 장차 소년이 사회에 복귀하는 데 장애가 없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 책자는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통고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고 제도의 개요 및 사례에 대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특히 학교 폭력이 증가하는 교육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비행성을 가지는 소년을 통고할 수 있는지, 그리고 통고 이후에 비행소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 하시는 선생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010년 및 2011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통고사건의 사례를 비행유형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통고사건의 처리에 길잡이가 되고,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자의 발간을 위하여 사례를 제공해 주신 전국의 소년부 판사님들과 자료 수집과 편집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사법지원실의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 4.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 경 춘

## 「소년 통고 실무」 자문 및 감수

### 「보호사법연구반」

성명	직책	비고
신한미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	팀장
김정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자문
윤웅기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자문
송승훈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자문
오연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팀원
신동주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팀원, 감수
심재광	서울가정법원 판사	팀원, 감수
김태균	수원지방법원 판사	팀원, 감수
이미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팀원
표현지	서울가정법원 판사	팀원
정현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팀원
이미선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간사

## 「소년 통고 실무」 책자 편집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이형관 법원주사보

# CONTENTS

<b>01. 통고 개요</b>	<b>9</b>
<b>가. 통고의 의의</b>	<b>9</b>
1) 통고의 필요성	9
2) 법률상 근거와 개념	10
3) 통고의 장점	10
4) 통고 대상자	11
5) 통고권자	11
<b>나. 통고의 방식</b>	<b>11</b>
1) 개요	11
2) 서면 제출 방법	12
3) 통고와 관련된 각 법원의 연락처	16
<b>다. 통고 후 사건처리절차</b>	<b>17</b>
1) 수리 여부의 결정	17
2) 과학적 방법에 의한 조사	17
3) 상담, 교육 등 처분 전 사전절차	18
4) 심리 개시 여부의 결정	18
5) 보조인	18
6) 심리기일	19
<b>라. 보호처분 결정 등</b>	<b>19</b>
1) 결정의 종류	20
2) 보호처분의 종류	20
3) 부가처분과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23
<b>마. 보호처분 이후의 조사·감독</b>	<b>24</b>
<b>02. 통고 현황분석</b>	<b>25</b>
<b>가. 통고 현황(접수 사건 기준)</b>	<b>25</b>
1) 전국 법원 현황	25
2) 비행 유형별 현황	26
3) 통고권자별 현황	26

<b>나. 조치 현황(종국일 기준)</b>	<b>27</b>
1) 보호처분 현황	27
2) 불개시 결정	28
3) 불처분 결정	28

### **03. 통고에 적합한 사안** **29**

<b>가. 학교장의 통고</b>	<b>29</b>
1)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	29
2)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29
3) 교권침해의 경우	30
4) 가정의 보호력이 미약한 경우	30
5) 학교폭력의 경우	30
<b>나. 보호자의 통고</b>	<b>31</b>
1) 가족에 대한 폭행의 경우	31
2) 보호자의 지도에 한계가 있는 경우	31
<b>다.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통고</b>	<b>31</b>

### **04. 통고 시 주의점** **33**

### **05. 통고 사례** **33**

<b>가. 학교현장에서의 통고사례</b>	<b>33</b>
<b>나. 가정 내에서의 통고사례</b>	<b>37</b>
<b>다. 사회복지시설 내에서의 통고사례</b>	<b>40</b>

### **06. 통고 Q&A** **42**



## 가. 통고의 의의



## 1) 통고의 필요성

➤ 교육을 통한 치료와 예방이 원칙입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1차적인 양육과 교육 책임은 가정과 학교에 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에 일탈을 하거나 비행에 빠진 청소년은 우선 가정과 학교의 사랑과 관심어린 교육으로 치료하고 재범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그렇지만 가정과 학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때에는 어떻게 할까요?

피해자 측의 고소나 고발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하는 것은 소년에게 상처를 주거나 낙인을 찍는 것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칠 것이 아니라, 보호자나 학교장이 직접 법원에 사건을 통고해 주시면, 법원이 나서서 조사하고 조치를 취함으로써 청소년의 성행이나 환경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통고에 따른 법원의 심리와 보호처분은 수사나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교육의 연장입니다.”

## 2) 법률상 근거와 개념

소년법	제4조제3항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 사회복지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38조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또는 학교, 사회복지시설, 보호관찰소의 장 등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를 할 수 있다.

통고는 이와 같이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의 장 등이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하는 절차입니다.

## 3) 통고의 장점

### ④ 신속한 문제해결

통고는 청소년비행의 초기 단계에 신속하게 법원에 문제 해결을 의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통고는 가정과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비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의뢰하여 보호자, 학교, 법원이 힘을 모아 초기에 청소년비행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다수 청소년비행은 보호자의 감독과 교육,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법원의 신속한 개입으로 초기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 ④ 수사를 받는 부담 최소화

통고에 의할 경우 소년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부담과 전과(범죄경력조회나 수사자료표)로 기록되는 불이익 없이 청소년비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의 심리를 비공개하고,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며, 보도 금지, 재판·수사·군사상 필요한 경우에만 조회응답할 수 있다는 소년법 규정에 근거하여 소년이 향후 취업과정에서 입는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4) 통고 대상자

	구분	대상자	연령
소년법	범죄소년	죄를 범한 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우범소년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li> <li>•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li> <li>•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li> </ul>	10세 이상 19세 미만
아청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		19세 미만

## 5) 통고권자

통고권자는 범죄소년, 촉법소년 또는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학교, 사회복지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입니다(소년법 제4조 제3항).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또는 아청법 제3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도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아청법 제38조 제4항).

실무상으로는 아동보호시설의 장이 아동보호시설(보육원 등)에서 비행을 저지른 소년을 통고하는 경우와 학교장이 학교 내에서 발생한 급우 간 폭행사건이나 교권침해 사건에 관하여 통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나. 통고의 방식



#### 1) 개요

통고는 서면(書面)으로 할 수도 있고 구술(口述)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통고를

할 때는,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거,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하는데, 구술로 하는 경우 학교장 등이 법원에 출석하여 법원사무관 등에게 위와 같은 기재사항을 진술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은 이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소년심판규칙 제6조 제3항).



통고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센터”(http://help.scourt.go.kr) 메뉴 중 “양식찾기” 메뉴의 “양식명”에 “통고”로 검색하여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 2) 서면 제출 방법

통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으로 우편 발송하면 됩니다.

전화로 하는 통고만으로는 적법한 통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의 담당부서에 팩스로 발송하면 됩니다.

# 통 고 서 (일반용)

○○가정법원 소년부 귀중

통고인	성명			
	직장명			
	보호소년과의 관계 (□에 √ 표시)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시설의 장	<input type="checkbox"/> 보호관찰소장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전화번호 (집 또는 직장)	(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위 통고인은 다음과 같이 보호 대상 소년을 발견하였으므로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귀 법원 소년부에 통고합니다.

소년	성명		주민등록번호	-
	학년, 반			
	주소			
	전화번호	(   ) -		
소년의 보호자	성명		소년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 -		

## 통 고 사 유

○ 통고하게 된 사유의 요지(□에 √ 표시)

<input type="checkbox"/> 범죄를 저지름(14세 이상 19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함(10세 이상 14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음	<input type="checkbox"/>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버릇)이 있음
	<input type="checkbox"/>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함
	<input type="checkbox"/>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촉하는 성벽(버릇)이 있음

○ 통고하게 된 사유의 상세(필요한 경우 별지 활용)

(일시, 장소 및 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통 고 서 (학교장용)

○○가정법원 소년부 귀중

통고인	학교장 성명			
	학교명			
	전화번호(직장)	( ) -	휴대전화	( ) -
	담당교사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	( ) -

위 통고인은 다음과 같이 보호 대상 소년을 발견하였으므로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귀 법원 소년부에 통고합니다.

소년	성명		주민등록번호	-
	학년, 반			
	주소			
	전화번호	( ) -		
소년의 보호자	성명		소년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 -		

## 통 고 사유

○ 통고하게 된 사유의 요지(□에 √ 표시)

<input type="checkbox"/> 범죄를 저지름(14세 이상 19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함(10세 이상 14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음	<input type="checkbox"/>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버릇)이 있음
	<input type="checkbox"/>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함
	<input type="checkbox"/>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촉하는 성벽(버릇)이 있음

○ 통고하게 된 사유의 상세(필요한 경우 별지 활용)

(일시, 장소 및 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해당 □에 √ 표시

1. 보호 대상 소년이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부분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보호 대상 소년과 피해 소년 사이에 화해(사과, 금전적 배상 포함)가 이루어졌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보호 대상 소년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가 개최되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1.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 ( )	
4. 자치위원회에서 보호 대상 소년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b>4-1. 자치위원회에서 보호 대상 소년에게 취한 조치</b> 피해 소년에 대한 서면 사과 <input type="checkbox"/> 피해 소년 및 신고·고발 소년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input type="checkbox"/> 학교에서의 봉사 <input type="checkbox"/> 사회봉사 <input type="checkbox"/>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input type="checkbox"/> 출석정지 <input type="checkbox"/> 학급교체 <input type="checkbox"/> 전학 <input type="checkbox"/> 퇴학처분 <input type="checkbox"/>	
5. 자치위원회에게 보호 대상 소년의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받게 하였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 자치위원회에서 피해 소년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b>6-1. 자치위원회에서 피해 소년에게 취한 보호조치</b> 심리 상담 및 조언 <input type="checkbox"/> 일시보호 <input type="checkbox"/>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input type="checkbox"/> 학급교체 <input type="checkbox"/> 그밖에 필요한 조치 ( ) <input type="checkbox"/>	

○ 첨부할 서류

-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다면 그 관련 자료 사본: 전담기구의 사실확인 결과 보고서(진술서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자료 포함), 자치위원회 속기록·의결서, 전문상담교사의 상담결과보고서, 담임교사·책임교사의 의견서 등
- 보호 대상 소년의 학생생활기록부

20 . . .

통고인 ○○○인

### 3) 통고와 관련된 각 법원의 연락처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하시거나 아래 법원을 직접 방문하시면 통고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각 법원의 통고 안내 부서

법원	관할(소년의 소재지)	담당 부서	연락처	
			담당 부서	대표
서울가정법원	서울특별시	가사과 소년보호접수	02-2055-7253	02-2055-7114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포천시·철원군·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고양시·파주시	민사합의과 소년단독	031-828-0427	031-828-0114
인천가정법원	인천광역시, 부천시·김포시	종합민원실 소년보호접수	032-620-4317	032-620-4114
수원지방법원	수원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성남시·하남시·평택시·이천시·안산시·광명시·시흥시·안성시·광주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여주시·양평군	가사과 소년보호접수	031-799-9925	031-210-1114
춘천지방법원	철원군을 제외한 강원도	형사과 소년단독	033-259-9410	033-259-9114
대전가정법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가사과 소년보호접수	042-480-2022	042-480-2000
청주지방법원	충청북도	종합민원실 소년보호접수	043-249-7223	043-249-7114
대구가정법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가사과 소년사건접수	053-570-1569	053-570-1500
부산가정법원	부산광역시	가사과 소년보호접수	051-590-0085	051-590-1114
울산가정법원	울산광역시, 양산시	종합민원실 소년보호접수	052-216-8887	052-216-8000
창원지방법원	양산시를 제외한 경상남도	형사과 소년단독	055-239-2234	055-239-2000
광주가정법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종합민원실 소년보호접수	062-608-1252	062-608-1200
전주지방법원	전라북도	형사과 소년부	063-259-5562	063-259-5400
제주지방법원	제주시, 서귀포시	민사과 분실 소년보호	064-729-2201	064-729-2000

※ 전화번호는 법원 내부의 사무분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 수리 여부의 결정

통고사건은 수사기관의 수사절차가 없었으므로, 통고받은 소년부 판사가 이를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비로소 보호사건으로 수리하게 됩니다(소년법 제11조 제2항). 소년부 판사는 통고서, 통고조서 및 참고자료를 검토하여 사건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2) 과학적 방법에 의한 조사

사건이 수리된 후에는 소년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사절차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기능 이외에도 소년 및 그 가족들의 심리변화·환경변화 등을 이끌어 내어 더 이상 보호소년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조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합니다. 또한 상담조사기간과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기간은 학교 출석일수로 인정됩니다.

조사관조사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을 전공하고 관련 전문자격을 가진 가정법원 소속 전문조사관이 소년을 면담하고 성장 및 가정환경 등을 조사하여 소년부 판사에게 보고합니다.
전문가진단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어 비행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소년에 대하여 정신건강 의학과 의사, 상담심리 전문가 등 법원으로부터 진단 의뢰받은 전문가가 면담하고 심리평가를 실시하여 소년의 정신적, 심리적 상태를 진단한 다음 소년부 판사에게 보고합니다.
상담조사	소년을 청소년공기움센터에 3~5일간(주간)에 출석하게 하여 상담하고 준법교육을 실시한 후 그에 관한 상담조사보고서가 소년부 판사에게 제출됩니다. 위 센터는 인성검사, 적성검사, 지능검사 외에도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준법교육, 건강진단, 집단미술치료, 상담조사관 면담, 보호자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규범의식이 해이한 소년, 비교적 엄격한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는 소년에 대하여 상담조사가 활용됩니다.
결정전조사	보호관찰관이 소년을 면담하고 소년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범행전력, 보호자의 경제상황 및 보호능력, 비행의 심화정도 등을 조사한 후 적절한 보호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소년부 판사에게 제출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	소년부 판사는 비행의 죄질이 중한 경우, 비행이 반복적이거나 단기간 재범인 경우, 잦은 가출 및 무단결석 등의 경우 소년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수도권), 소년원(지방권)에 약 3~4주간 임시위탁함으로써 시설 내 수용을 통하여 면밀한 조사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3) 상담, 교육 등 처분 전 사전절차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하기에 앞서 소년과 보호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상담, 교육 등 절차를 미리 이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소년이 해당 절차를 성실히 이수하는 경우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절차에는 부모와 함께 하는 절차가 많아 소년과 부모 사이의 관계 회복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심리상담	소년과 보호자로 하여금 정신과의사,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전문가 등의 전문가로부터 약 3~4개월(6~12회기) 동안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하고, 소년조사관이 그 과정에 개입하여 소년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조사절차입니다. 통상 1주당 1회 이상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상담 또는 치료가 실시됩니다.
화해권고	보호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 보호처분을 하기에 앞서 화해권고절차에 회부하면 법원이 위촉한 화해권고위원이 피해자와 보호소년이 화해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합니다. 이러한 화해권고에 따라 보호소년이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함으로써 보호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고 소년보호 재판절차를 통하여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구현하게 됩니다.
가족캠프	지역 청소년 관련기관과 연계한 1박 2일 가족캠프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위 캠프를 통하여 소년과 보호자 사이의 관계가 개선되어 서로간 이해가 증진되고 궁극적으로 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재비행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처분전교육	소년 및 보호자가 법원에서 소년조사관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제도입니다. 특히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저연령 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준법의식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교육도 함께 실시하여 소년의 재비행 방지에 효과가 있습니다.
청소년 참여법정	청소년으로 구성된 참여인단이 또래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적합한 부과과제를 선정하여 소년부 판사에게 건의하면, 소년부 판사가 소년에게 부과과제의 이행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소년은 다양한 부과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4) 심리 개시 여부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나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불개시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있어 심리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도 소년을 훈계할 수 있고,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보살피고 교육하도록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5) 보조인

### 가) 의의

소년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보조인은 절차상으로 소년의 이익을 변호하는 역할 외에도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협력자의 지위도 있습니다.

### 나) 국선보조인

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등 소년부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의 비용으로 활동하는 국선보조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특히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된 경우 따로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소년부 판사는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합니다.

## 6) 심리기일

소년부 판사가 심리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심리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기일을 지정한 후 소년과 보호자를 소환하고, 보조인이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심리 기일을 알리게 됩니다.

(형사재판의 경우와 달리) 보호자는 심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피해자나 그 대리인 등이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소년부 판사는 원칙적으로 그 기회를 부여합니다.

심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소년의 인격을 보호하고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 라. 보호처분 결정 등

## 1) 결정의 종류

### ② 불처분 결정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불처분 결정에 의하여 사건은 종결됩니다.

### ② 검사에 송치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고 그 동기와 죄질에 비추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입니다.

### ② 소년보호처분 결정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보호처분을 함께 묶어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세한 보호처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 보호처분의 종류

### 가) 보호처분 요약

구분	보호처분의 종류	기간 또는 시간 제한	대상 연령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2호	수감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1년 연장 가능)	10세 이상
6호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구분	보호처분의 종류	기간 또는 시간 제한	대상 연령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세 이상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 나) 각 보호처분 설명

### ㉠ 1호 처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보살피고 보호함)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호자에게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것이므로 보호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고 그 위탁기간 중 처분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불처분과는 다릅니다. 보호자에 대한 특별 교육명령을 함께 하여 보호환경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위탁보호위원’이라고 부르는데, 위탁보호위원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주기적으로 소년을 만나서 상담하고 조언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신병 불인수 위탁보호위원과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직접 보호 양육하고, 소년에게 적절한 조언과 상담활동 등을 하는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이 있습니다.

### ㉡ 2호 처분

소년에게 일정한 내용의 수강(교육 또는 상담)을 하도록 명하는 수강명령입니다.

- 소년부 판사는 소년이 이행하여야 할 총 수강시간과 집행기한을 정하여 결정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강할 강의의 종류(준법운전강의, 성 관련 수강 및 상담 등)나 방법 및 그 시설 등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소년부 판사는 법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내 청소년상담센터, 성폭력상담센터 등 수강기관 또는 보호관찰소에서 20~40시간의 수강 또는 상담을 받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 ㉢ 3호 처분

소년에게 일정한 내용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하는 사회봉사명령입니다.

- 소년부 판사는 소년이 이행하여야 할 총 사회봉사시간과 집행기한을 정하여 결정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봉사의 종류나 방법 및 그 대상이 될 시설 등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④ 4, 5호 처분

보호관찰은 소년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과 원호 등을 받도록 하는 보호처분입니다.

- 보호관찰은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소속의 보호관찰관이 담당합니다.
- 보호관찰 기간에 따라 1년의 단기보호관찰(4호 처분)과 2년의 장기보호관찰(5호 처분)로 나뉩니다.

#### ⑤ 6호 처분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것으로, 가정의 보호력이 부족하고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한 소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본래의 주거지가 아닌 일정한 시설 내에서 생활을 하도록 명하는 보호처분인 점에서 1호부터 5호까지의 처분과는 구별되고, 또한 그 시설이 소년원 같은 공적 시설이 아니라는 점에서 8호 내지 10호의 소년원 송치 처분과 구별됩니다.
- 소년이 시설 내에 지내면서 학력(출석일수)이 인정되고, 검정고시 준비, 미용교육, 바리스타교육, 제과·제빵교육, 애견미용교육 등 각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보호관찰 처분과 병과되므로, 6개월이 경과하여 소년이 시설에서 퇴소한 이후로도 보호관찰이 종료되기 전까지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게 됩니다.

#### ⑥ 7호 처분

소년을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 소년에게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남용과 같이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에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 법원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정신과병원에 소년을 입원시키거나, 또는 의료소년원인 대전소년원에 위탁하여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 이곳에서 생활하는 기간도 학교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8호 처분

1개월 이내의 기간(통상 4주)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 단기간 동안 집중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설 내 수용 기간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 보호처분 결정에서 입교할 소년원과 입교할 날짜를 정해 주면, 소년은 해당하는 날짜에 해당 소년원에 입교하면 됩니다.
- 이곳에서 생활하는 기간도 학교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통상적으로 보호관찰 처분과 병과되므로, 소년이 소년원에서 출원한 이후로도 보호관찰이 종료되기 전까지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게 됩니다.

### 9, 10호 처분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 단기인 9호 처분은 최대 6개월을, 장기인 10호 처분은 최대 2년을 각각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특히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은 학교 교육을 계속할 것인지, 검정고시를 준비할 것인지, 직업훈련을 받을 것인지 등 각자의 특성에 따라 전국의 소년원으로 배치되어 해당 교육, 훈련을 받게 됩니다(남자소년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춘천, 제주 등, 여자소년 - 안양, 청주).

## 3) 부가처분과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 가) 보호관찰을 할 때의 부가처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청소년꿈키움센터 등에서 실시함) 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특별준

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 제도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자녀도 바뀌지 않는다는 데 착안하여, 소년의 부모로 하여금 법원, 보호관찰소, 소년원, 상담센터 등에서 자녀양육 전문가에게 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한 전문강좌를 듣거나 상담을 받도록 명하는 부가처분입니다.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별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 보호처분 이후의 조사·감독



보호처분을 한 이후에도 법원은 소년이 보호처분 내용을 잘 이행하는지 여부, 다른 비행에 노출되고 있지는 않은지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7조 제1항 단서).

# 02

## 통고 현황분석

### 가. 통고 현황(접수 사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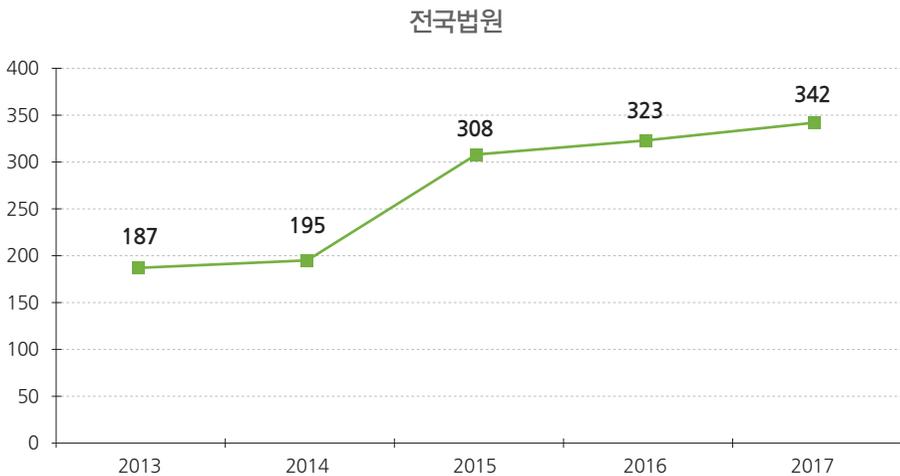


#### 1) 전국 법원 현황

##### 가) 현황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전국	187	195	308	323	342	1,355

##### 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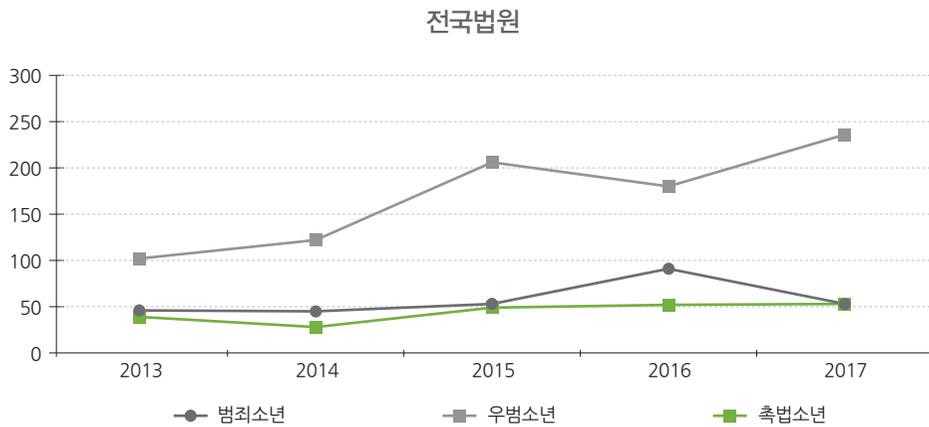


## 2) 비행 유형별 현황

### 가) 현황

비행 유형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범죄소년	46	45	53	91	53	288
우범소년	102	122	206	180	236	846
촉법소년	39	28	49	52	53	221
합계	187	195	308	323	342	1,355

### 나) 추이



## 3) 통고권자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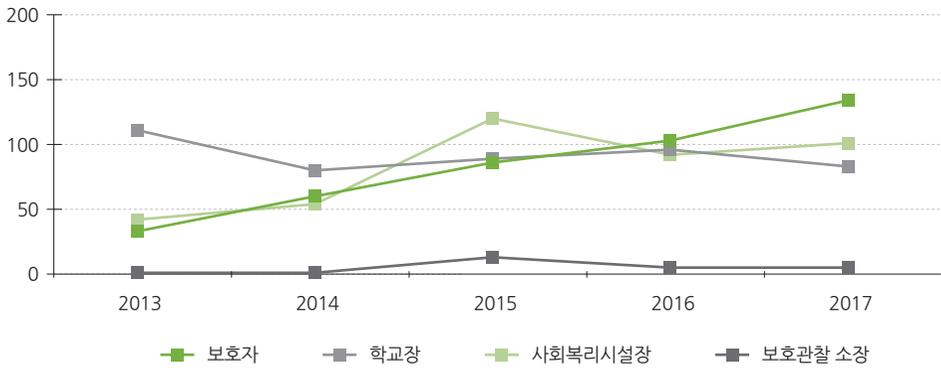
### 가) 현황

연도 \ 통고권자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지 시설장	보호관찰 소장	기타	합계
2013	33	111	42	1	0	187
2014	60	80	54	1	0	195
2015	86	89	120	13	0	308
2016	103	96	92	5	27	323

연도 \ 통고권자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지 시설장	보호관찰 소장	기타	합계
2017	134	83	101	5	19	342
합계	416	459	409	25	46	1,355

## 나) 추이

통고권자별 추이



## 나. 조치 현황(중국일 기준)



### 1) 보호처분 현황

연도 \ 처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1호	112	111	172	202	185	782
2호				1	1	2
4호		2				2
5호	1		2		3	6
6호	23	44	45	34	46	192
7호	2	2	5	10	18	37

처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8호	1	2	10	7	8	28
9호	4	7	5	12	7	35
10호	6	7	8	7	16	44
합계	149	175	247	273	284	1,128

## 2) 불개시 결정

건수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결정건수	15	23	12	23	16	89

## 3) 불처분 결정

건수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결정건수	5	10	13	22	19	69

## 가. 학교장의 통고



### 1)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비행은 저지르는 경우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비행, 예를 들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이나 교사의 물건 또는 돈을 훔치거나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치는 등 상습적으로 절도를 일삼는 경우도 통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조교제, 성매매 등에 노출된 소년(우범소년)은 통고의 필요성이 높습니다. 특히 비행 초기단계의 소년에 대하여는 통고절차를 통하여 법원이 신속하게 개입함으로써 소년의 성행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 2)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소년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심리상태가 불안정하여 가출을 하는 등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진단 및 상담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보호자 및 소년이 적극적으로 진단과 치료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원에 통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3) 교권침해의 경우

교사 등 교직원에 대한 모욕, 폭행,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교권침해 사례는 학교폭력이 아니므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조치는 할 수 없고, 선도위원회 개최를 통한 지도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학교차원의 선도위원회 개최만으로는 소년에 대한 선도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한편, 대부분의 교사들은 소년의 비행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염려하여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소년의 성행교정을 위해 통고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4) 가정의 보호력이 미약한 경우

소년이 가정의 보호력이 미약하여 가출하고 학교에 장기간 무단결석한 경우라면 복지적 측면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통고를 통하여 가정의 보호력을 점검하고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이나 아동복지시설을 연계하는 등으로 소년비행의 환경적 요인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무단결석으로 수업일수가 부족하여 학업이 유예될 상황에 있는 경우 통고 후 소년에 대한 신속한 임시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학업을 연계시킬 수도 있습니다.

### 5)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학교폭력도 통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혹은 그 보호자가 학교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사를 상대로 욕설, 폭행을 하는 등 폭력적인 양상을 띠고 있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자체가 어렵거나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통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 가해학생의 비행 자체는 경미하지만 피해가 커서 합의도출이 어려운 사건도 통고 이후 화해권고절차로 이행이 가능하고 화해권고절차 내에서 다툼을 해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통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나. 보호자의 통고



### 1) 가족에 대한 폭행의 경우

소년의 부모 또는 조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에 대한 폭행사건의 경우 보호자가 통고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년이 가족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 가족입장에서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을 하기는 힘들지만, 초기에 소년의 비행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절차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2) 보호자의 지도에 한계가 있는 경우

소년이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비행을 계속 저지르거나 가출을 반복하고 성매매를 일삼고 있는데 보호자로서 소년의 생활을 지도하기에 한계가 있는 경우라면 통고를 통하여 위탁보호위원을 선임하거나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등으로 소년의 생활을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학교의 장이나 생활지도교사가 보호자와 협의하여 소년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보호자에게 통고를 안내하고 보호자가 소년을 통고할 수도 있습니다.

## 다.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통고



소년이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폭행, 절취, 공갈, 성추행행위, 사회복지시설의 교사에게 폭행, 폭언하는 행위, 가출 및 무단외박, 흡연, 다른 소년들 선동 등 규칙 위반 행위를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소년을 실효적으로 교육할만한 수단이 없는 경우 통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04

# 통고 시 주의점

가. 소년이 비행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경우라면 보호처분을 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 준하는 정도의 사실관계 소명이 필요하므로 심사숙고하여 통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절차중복의 우려가 있으므로 통고 활용에 있어서 법원의 조기개입이 필요한지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 일단 법원에 통고를 하게 되면 통고권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법원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종국적인 결정이 있어야 하는 만큼 통고의 필요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한 뒤 통고하여야 합니다.

라. 소년의 시설 전원을 목적으로 사회복리시설의 장이 통고하는 경우가 있으나, 통고를 통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위탁(6호 처분) 또는 병원, 요양소에 위탁(7호 처분), 소년원 송치(8 내지 10호 처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에서의 통고만으로 시설 전원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소년이 위 시설에 위탁된 경우에도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면 기존 사회복리시설로 복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가. 학교현장에서의 통고사례



## 1 교사에 대한 폭행과 폭언

구분	내용
1. 통고자	• 학교장
2. 비행사실	• 3학년인 소년은 1학년 때부터 상습적으로 무단지각과 무단결석을 해왔으며, 가출까지 하는 등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였음. 소년의 생활태도를 지적하는 교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음
3. 조사방법	• 소년조사관 조사
4. 특이사항	• 학교장의 통고에 대하여 소년과 부모는 전학을 가겠다고 함. 법원이 먼저 개입하기보다는 경과를 지켜보고 전학이 결정된 후 개입하기로 하였으나, 도중에 소년이 재차 가출하여 전학 절차가 중단됨 • 소년의 부모는 학교에 대한 불만이 있었으나 소년의 성행개선을 위해서 법원의 통고절차 진행에 협조함
5. 처분내용	•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상담)명령,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 2 동급생에 대한 폭력, 흡연, 음주 등

구분	내용
1. 통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장</li> </ul>
2. 비행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은 수업시간에 떠들거나 잠을 자는 등 수업 분위기를 방해하며 선생님들의 지도에 잘 따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함. 순간적으로 욕하는 성질을 참지 못해 친구들에게 화를 내거나 때리기도 함. 흡연, 음주, 학교폭력 사안을 일으키며 징계를 받았으나 반성하고 조심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li> </ul>
3.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li> <li>• 소년조사관 조사</li> </ul>
4.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의 모는 13년 전 사망하고, 부가 소년과 동생을 키움. 부의 직업 특성상 지방출장이 잦고 늦게 귀가해서 소년을 돌볼 시간이 부족함. 인근에 사는 고모가 소년을 돌봐주고 있음</li> <li>• 소년은 과거 운동부 활동을 했으나 운동을 중단하여 현재의 학교로 전학 오게 됨. 학업적 기초가 없어 학업 진도를 따라가지 못함</li> <li>• 소년의 부는 통고에 대해 수긍하고 법원의 개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li> </ul>
5.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보호위원 감호위탁, 수강(상담)명령,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li> </ul>

### 3 동급생 폭행(1)

구분	내용
1. 통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장</li> </ul>
2. 비행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은 초등학교 6학년으로, 언어적, 신체적, 성적 폭력이 일상적이며 심각한 수준이고, 피해 학생들도 30여 명에 이룸. 또한 소년의 도벽과 거짓 말도 심각한 상태였으나, 소년과 소년의 모 또한 교사의 지도나 상담에 불응하거나 거부함</li> <li>• 소년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학교 자체적으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심리검사 및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모의 거부와 소년에 대한 방임으로 원활히 진행되지 않음</li> </ul>
3.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조사관 조사</li> <li>• 전문가 진단(소년, 소년의 모)</li> <li>•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 임시위탁</li> </ul>
4.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소년과 소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했음</li> <li>• 진단전문가로 위촉된 전문의 2명에게 모와 소년의 진단을 의뢰하고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함</li> </ul>
5. 처분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에 대한 약물치료와 심리치료에 비협조적인 소년의 모를 대신하여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에게 소년을 임시위탁하여 지속적 치료 및 학교생활 지원을 도모함</li> <li>• 이후 학교에서의 문제 행동이 완화된 비교적 잘 지내고 있고, 소년은 주말마다 원가정으로 임시 복귀하고 있음</li> <li>• 법원은 소년의 적응 상황을 점검하며 상담 또는 수강을 통하여 모의 보호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li> </ul>
6.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 감호위탁</li> </ul>

## 4 동급생 폭행(2)

구분	내용
1. 통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장</li> </ul>
2. 비행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급생인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함</li> <li>• 소년이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학교 징계를 이행하지 않겠다며 버티는 등, 학교 내에서의 해결이 어려워서 학교장이 통고함</li> </ul>
3.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조사관 조사</li> <li>• 화해권고제도</li> </ul>
4.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은 비교적 학교생활에 성실하게 임하였고, 비행전력도 없음</li> <li>• 소년은 본 사건에 대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었으므로 화해권고제도를 활용함</li> <li>• 화해권고 기일에서 소년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병원비 및 금전적 피해보상을 제공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소년의 사과를 받아들임</li> </ul>
5.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자 감호위탁</li> </ul>

## 5 동급생 폭행(3)

구분	내용
1. 통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장</li> </ul>
2. 비행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은 교실 내에서 같은 반 친구인 피해자가 장난을 치며 손바닥으로 배를 치고 도망가자 이를 그만둘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같은 장난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머리와 복부를 주먹과 발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함</li> </ul>
3.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조사관 조사</li> <li>• 화해권고제도</li> </ul>
4.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해권고 기일에서 소년은 본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앞으로는 비슷한 상황에서 폭력이 아닌 대화로써 해결하겠다고 다짐하였으며, 피해자도 장난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함</li> <li>• 소년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향후 본 사건에 관해서는 불필요한 소문이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함</li> </ul>
5.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처분 결정</li> </ul>

## 6 교사에 대한 폭언, 교칙위반

구분	내용
1. 통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장</li> </ul>
2. 비행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은 교칙을 위반하여 화장, 음주, 흡연을 하고, 이에 대한 교사의 지도에 대해서 욕설, 폭언 및 자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교권침해행위를 함</li> <li>• 소년은 비행으로 학교에서 출석정지 등 처분을 수회 받았고, 학교에서 대안 교육을 권유하였으나 보호자의 협조가 없고 소년이 강력히 거부함</li> </ul>
3.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조사관 조사</li> </ul>
4.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은 성행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려는 의지가 없고 준법의식이 부족하여 경각심 고취가 필요함</li> <li>• 소년의 보호자 역시 다른 아이들도 화장을 하는데 소년만 나쁘게 본다고 소년을 두둔하며 소년을 통제하지 못함</li> </ul>
5.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관 조사 이후 소년의 품행이 다소 안정되어, 향후 소년이 비행을 반성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였음</li> <li>• 수강(상담)명령, 사회봉사, 단기보호관찰</li> </ul>

## 7 보호자의 양육방임, 장기무단가출

구분	내용
1. 통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장</li> </ul>
2. 비행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학생인 소년은 상습적으로 장기간 무단결석 및 가출을 하면서 성인 남성과 지속적 교제를 하고 있으나, 소년의 보호자는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고 방임함</li> </ul>
3.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관찰소 결정전 조사</li> </ul>
4.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은 불우한 가정환경을 타하며 귀가하지 않고, 학교에 무단결석 및 무단지각을 반복하였음</li> <li>• 부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접근금지명령을 받아 별거 중이고, 모는 2개월 이상 소년이 가출하여 소재불명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방임함</li> </ul>
5.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의 가정환경이 개선되는 데에 시간이 걸리고, 성인 남성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하고 있어, 소년의 생활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교육할 수 있는 처분이 필요함</li> <li>• 위탁보호위원 감호위탁, 단기보호관찰</li> </ul>

## 8 절도

구분	내용
1. 통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장</li> </ul>
2. 비행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은 총 5회에 걸쳐 공범과 학교 공공기물인 컴퓨터를 절취함</li> <li>• 소년은 절취 이후 컴퓨터 부품을 해체하여 매매 하는 역할을 하는 등, 비행성이 단순절도보다 심화됨</li> <li>• 학교 선도위원회의 심의 결과, 소년에게 경각심을 주고 학업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고를 하기로 함</li> </ul>
3.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조사관 조사</li> <li>• 전문가 상담</li> <li>•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li> </ul>
4.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은 조사관 조사 및 전문가 상담 이후에도 공범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절도를 반복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 됨</li> </ul>
5.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상담)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보호관찰, 보호자 특별교육명령</li> </ul>

## 9 교내에서의 갈취, 협박, 과도한 분노표출

구분	내용
1. 통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장</li> </ul>
2. 비행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학년 학생에게 핸드폰을 달라고 하여 갈취함</li> <li>• 남자 화장실에서 탈의 중에 화가 나 화장실 칸에 들어가 벽을 치고 문을 걷어차며 분노를 표출함</li> <li>• 수업시간에도 친구들과 다툼이나 의견충돌이 생기면, “죽여 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칼, 샤프, 배드민턴 라켓 등으로 위협을 가하는 등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 매우 극단적이고 감정기복이 심함</li> </ul>
3.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li> <li>• 소년조사관 조사</li> </ul>
4.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은 무연고 아동으로, 현재까지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은 채 보육시설에서 지내고 있음</li> <li>• 신체적 건강은 양호하나, ADHD 진단을 받았음.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약물치료도 받고 있음</li> </ul>
5.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의 정서안정을 위해서 장기적인 치료와 교육이 필요함</li> <li>• 보호자(시설장) 감호위탁, 장기보호관찰</li> </ul>

## 10 성추행, 교칙위반

구분	내용
1. 통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장</li> </ul>
2. 비행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은 중학교 2학년에 진학하면서 출결불량, 학업소홀 및 불량교우들과 교제를 하였고, 동성 친구들과 힘을 합하여 동급 여학생을 강제 추행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적이 있음</li> <li>• 이후에도 소년은 생활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교사에게 반항적인 태도를 보임</li> </ul>
3.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조사관 조사</li> </ul>
4.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은 통고된 내용에 대해 일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교사들이 자신을 편파적으로 나쁘게만 보고 있다면서 서운함을 표현함</li> <li>• 보호자는 소년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학교에서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반항의 정도가 크다고 하고, 특히 부는 소년을 과거 엄격하게 체벌을 하였고, 현재는 대화가 단절되어 훈육에 어려움이 있다고 함</li> </ul>
5.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이 학교와 어른들에 대한 불만과 피해의식이 커서, 강한 처벌보다는 성폭력 교육 및 심리상담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li> <li>•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성교육 및 상담)명령</li> </ul>

## 나. 가정 내에서의 통고사례



### 1 보호자에 대한 폭행

구분	내용
1. 통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자</li> </ul>
2. 비행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은 2년간 학교도 가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컴퓨터 게임에만 몰입하고 있음. 제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부모에게 고성을 지르며 물건을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모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하기도 함</li> </ul>
3.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조사관 조사</li> <li>• 전문가 진단</li> <li>• 전문가 상담</li> </ul>
4.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은 초등학교 때부터 우울증, ADHD 진단 하에 약물치료를 받았고, 중학교 때도 무단결석하고 게임에만 빠져 있어 정신과 병동에 3차례 입원하였음. 강제입원 과정을 겪으며 소년과 보호자의 사이가 악화되어 소년의 부모가 소년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음</li> <li>• 소년은 또래관계의 어려움으로 학교생활 부적응을 겪다가 중 1년경 자퇴하였음. 검정고시로 중학교를 졸업한 뒤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으나, 1학기 만에 자퇴함</li> <li>• 소년의 부모는 소년에게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강제입원 과정에서 오히려 소년과의 관계가 악화된 바가 있어 공권력을 통해서 강제적으로라도 소년의 치료를 진행하고자 법원에 통고함. 특히 또래와 교류할 수 있는 기관 내에서 장기적인 보호와 치료를 받도록 하고 싶다고 밝힘. 소년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느냐.”며 조사관 조사에 불출석하였음</li> </ul>
5.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의 경우, 가족 간 갈등 및 대인관계 부적응에 초점을 두고 장기간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였음. 이에 전문가 진단 및 상담을 통해 재비행 예방을 도모함</li> </ul>

## 2 성추행, 폭행

구분	내용
1. 통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자</li> </ul>
2. 비행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속인인 소년의 모는 곳을 하기 위해서 지방에 가는 일이 잦았고, 부는 가정을 돌보지 않았음. 소년의 조부모도 연로하여 소년과 여동생을 돌보지 못한 사이 소년이 여동생과 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음란물을 접하면서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한 소년이 여동생을 성추행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남</li> <li>• 소년은 여동생에게 성적인 접촉을 하고 여성 속옷에 관심 가지는 등 성적인 문제행동을 나타내고 있으며,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여 지도에 어려움이 있음</li> </ul>
3.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조사관 조사</li> <li>•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li> </ul>
4.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은 학교에서도 기질적인 산만함과 무속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여 또래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고, 가정 내에서도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하여 자존감이 낮게 형성되었으며, 올바른 훈육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li> </ul>
5.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성교육 및 상담)명령, 단기보호관찰</li> </ul>

### 3 보호처분 이후에도 계속된 문제행동

구분	내용
1. 통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자</li> </ul>
2. 비행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학생인 소년은 1년 전에도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았으나, 해당 보호처분을 불이행하여 무거운 처분으로 변경된 바 있음</li> <li>• 그러나 소년은 무단결석 및 불량한 교우관계를 계속하여 성폭행 피해를 입기도 하였으며, 가출 및 흡연 등의 문제행동을 지속함</li> <li>• 보호자는 소년이 과거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성행개선의 노력이 없다는 이유로 통고함</li> </ul>
3.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li> <li>• 소년조사관 조사</li> </ul>
4.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은 가출하여 불량한 교우들과 지내던 중 성폭행 피해를 입은 바 있고, 현재도 소년원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남자친구와 교제를 지속하고 있으며, 불상의 성인여성 및 남성들과 일주일간 가출하기도 함</li> </ul>
5.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된 가출과 불건전한 교우관계로 소년 스스로가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시설내처분이 필요함</li> <li>• 장기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li> </ul>

## 4 반복된 절도

구분	내용
1. 통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자</li> </ul>
2. 비행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은 과거에도 친구 집에 놀러가서 통장 2개를 훔친 적이 있었고, 선생님의 지갑에도 손을 댄 적이 있음. 이후 가출하여 쉼터에서 생활을 하였으나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반복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훔침</li> <li>• 소년이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상습적으로 돈을 훔쳤으며, 이에 보호자가 소년의 보호에 한계를 느껴 법원에 통고함</li> </ul>
3.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관찰소 결정전 조사</li> <li>•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li> </ul>
4.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는 소년의 상습적인 비행행위에 대해 보호력에 한계를 느끼고 있음</li> <li>• 소년은 충동적으로 절도를 하고, 자제력이 미약하여, 도벽에 대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li> </ul>
5.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보호위원 감호위탁, 장기보호관찰(특별준수사항 : 3개월간 야간외출 금지, 심리상담치료를 계속 받을 것)</li> </ul>

## 5 조건만남(성매매)

구분	내용
1. 통고자	• 보호자
2. 비행사실	• 소년은 모텔에서 혼숙하고 조건만남을 하려고 하다가 경찰서에 신고됨 • 보호자는 소년이 조건만남을 하고 다니면 임신을 하게 될까 두렵고, 이러한 소년의 행동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힘들어 통고함
3. 조사방법	•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
4. 특이사항	• 소년은 과거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못하여 시설내처우로 처분이 변경됨. 위 처분이 종료된 후 모와 생활하던 중 다시 비행을 저지름
5. 처분내용	• 장기보호관찰,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6 가출하여 친구들과 혼숙함(가출패밀리)

구분	내용
1. 통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자 및 학교장</li> </ul>
2. 비행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은 중학교 2학년 경부터 무단결석을 시작하여, SNS를 통해 알게 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가출을 반복하다 1개월째 귀가하지 않고 있음</li> <li>• 소년은 가출한 동안 여러 쉼터를 전전하거나 가출 청소년들과 월세 방에 모여 지내고 있었는데, 술과 담배에 노출된 채 조건만남(성매매)을 함</li> <li>• 소년의 부모는 더 이상 보호자의 통제가 통하지 않아서 법원에 통고함</li> </ul>
3.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조사관 조사</li> <li>•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li> </ul>
4.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은 어려서부터 ADHD로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의 어려움을 겪어 왔음</li> <li>• 소년은 부의 폭행을 이유로 가출을 반복하고 있으며, 소년이 폭행으로 부를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음</li> <li>• 소년의 경우 거취를 알 수 없는 상태였으며, 성매매의 피해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로 파악되어 즉시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함</li> </ul>
5.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이 이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죽고 싶다’는 문자를 보내고 충동적으로 자해하는 모습이 있어 치료가 필요함</li> <li>•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li> </ul>

## 다. 사회복지시설 내에서의 통고사례



### 1 시설 내에서의 폭행 등

구분	내용
1. 통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시설장</li> </ul>
2. 비행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이 친구와 놀다가 통금 시간을 지키지 못하자, 혼날 것이 두려워 함께 있던 시설 아이들과 공모하여 귀가하지 않음</li> <li>• 소년은 학교에서 시설 후배를 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놀린 아이를 폭행하고, 시설에서 형들이 때리라고 해서 다른 아이를 폭행함</li> <li>• 소년은 학교생활에 불성실하고 흡연을 하며 시설 선생님의 지도에 반항하는바, 소년의 이러한 행동이 다른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쳐 시설 전반적으로 아이들의 통제가 어렵다고 함</li> </ul>
3.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조사관 조사</li> </ul>
4.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관이 소년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교육하였고, 소년도 잘 지내보려 노력하는 모습도 있었으나, 시설 내에서 변화가 지속되지 못함</li> </ul>
5.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 감호위탁</li> </ul>

## 2 시설 내에서의 지속적인 규칙 위반

구분	내용
1. 통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시설의 장</li> </ul>
2. 비행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던 소년이 시설 내 규칙 위반, 지도교사의 지시에 불응, 심리치료 거부, 지속적인 음주와 절도를 저지름</li> <li>• 시설장은 소년에 대한 보호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호소하며 통고함</li> </ul>
3.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li> <li>• 소년조사관 조사</li> </ul>
4.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에 의해 보육시설에 맡겨져 10여 년 동안 모와 연락이 두절되었음. 친부모의 보호력이 전무하고, 보육시설에서도 소년에 대한 보호가 어려워 강제적인 처분을 통한 소년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li> <li>• 조사관 조사 이후 소년분류심사원에 3주 위탁하여 소년에 대한 교육적 선도효과를 기대하였으나 불량한 시설 내 생활로 인해 위탁을 연장함</li> </ul>
5.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li> <li>• 처분 이후에도 소년에 대한 정기적인 집행상황 점검을 통해 소년의 건전한 생활적응을 도모함</li> </ul>

### 3 시설교사에 대한 폭행

구분	내용
1. 통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시설의 장</li> </ul>
2. 비행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은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원생들과 사이가 나빠지자 학교 친구들에게 말해 원생들을 문자로 위협하도록 하였고, 원생들과의 갈등으로 지도 수녀와 상담하던 중 지도 수녀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폭행하였음</li> <li>• 소년이 분노조절이 되지 않아 약을 복용하도록 하였으나 약복용을 거부하여 폭력적인 성향이 점점 심해지면서 통제가 되지 않아 통고함</li> </ul>
3.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li> </ul>
4.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은 부모의 이혼으로 시설에 위탁되어 생활하면서 폭력적인 성향으로 약물치료 중임</li> <li>• 소년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였으나, 소년을 보호하는 시설 원생 및 교사들은 소년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하면서 소년이 일정기간 다른 시설로 옮겨서 생활하길 원하였음</li> </ul>
5.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 감호위탁, 단기보호관찰</li> </ul>

## 4 상습적 가출, 성매매

구분	내용
1. 통고자	• 사회복지시설의 장
2. 비행사실	• 여자인 소년은 쉼터에서 상습적으로 가출하였고, 성인남성을 만나 용돈을 받았다고 하나 성매매의 정황이 관찰되어 통고함
3. 조사방법	• 소년분류심사원 임시 위탁
4. 특이사항	• 소년은 유년기 모가 사망한 이후 부의 지속적인 학대와 방임으로 인해 낮은 자존감과 정서적 위축을 경험한 것으로 보임. 이에 정서가 불안정하고, 사회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5. 처분내용	• 위탁보호위원 감호위탁, 수강(상담)명령, 단기보호관찰

**Q** 통고를 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되나요?

**A**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② 피해학생의 보호, ③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④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필수적으로 심의를 열어야 합니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따라서 학교장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에 통고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의 소년보호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전문심리상담지원, 소년과 피해자 간의 화해권고절차의 진행,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에 관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 징계 등을 결정하기 전에 통고를 신청하였다면 법원의 재판경과를 기다려 그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통고를 하는 경우 통고 대상 소년의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통고는 학교장의 재량사항이고 소년의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소년의 보호자가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 학교 내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해당할 경우 일률적으

로 통고를 하거나 소년의 보호자에게 통고의 필요성에 관한 사전 설명이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Q 통고를 하면 피해자는 고소를 할 수 없나요?**

**A** 피해자의 고소권은 피해자의 권리이므로 학교장이 통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의 조사와 고소를 통한 수사기관의 절차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통고가 신속히 이루어졌다면 피해자에게 통고 사실을 알리고 재판절차에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이 있음을 고지하여 피해자의 권리가 통고로 인한 재판절차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합니다.

**Q 통고를 통해 처벌이 아닌 화해를 통하여 소년과 피해자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나요?**

**A** 소년보호재판 절차 중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피해자와 소년 모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절차로 화해권고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화해권고제도 진행에 동의하면 화해권고위원이 양측의 입장을 청취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겪었던 상황과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어려움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게 되고, 추가적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여 피해를 회복하게 됩니다. 소년에 대한 처분은 화해권고기일 결과와 이행여부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학교의 의견이 반영되기도 합니다.

**Q 통고사건 진행 중 학교의 의견은 반영될 수 있나요?**

**A**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소년의 가정 내 생활, 학교생활, 친구관계 등을 조사합니다. 학교장 통고의 경우 소년의 학교생활과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관 또는 보호관찰관 등을 통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이 때 학교 측의 의견을 확인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재판시작 후 3~6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소년의 학교생활을 관찰하기도 합니다.



**통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이 전과기록에 남아 소년의 장래에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소년보호처분은 당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 따라서 그 내용이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을 거쳐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은 수사경력자료에 비행명 등이 기재됩니다. 이와 달리 통고로 인한 사건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수사경력자료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교권침해행위에 대하여도 통고를 이용할 수 있나요?**



학교장에 의한 통고는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폭행, 재물손괴 등과 연결된 교권침해행위에 대해서도 통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사로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 학생을 조사받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인 통고의 활용으로 교권을 회복하고, 해당 학생과의 관계회복 및 학생의 학교적응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 소년 통고 실무 (개정판)

---

인 쇄 2018년 9월 ??일

발 행 2018년 9월 ??일

발행처 법원행정처

디자인 흥디자인 02.464.5167

---